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스토킹·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08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스토킹·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06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개 요	1
【양부남의원안】 (국가공무원법)	1
【양부남의원안】 (지방공무원법)	2
II.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5

I. 개 요

【양부남의원안】(국가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양부남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8. 18.

다. 회부연월일 : 2025. 8.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성비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징계 시효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들 범죄에 대해서도 시효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 신설).

【양부남의원안】 (지방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양부남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8. 18.

다. 회부연월일 : 2025. 8.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성비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징계 시효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들 범죄에 대해서도 시효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 신설).

Ⅱ. 검토의견¹⁾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중 음란 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톱킹범죄로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 ----- ----- -----.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1. ----- -----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u><신설></u>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나 제3

1)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조문 취지 및 개정 내용이 동일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조문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u><신 설></u> 2. · 3. (생 략) ② · ③ (생 략)	<u>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 하는 행위</u> <u>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u>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한다.	

2. 검토의견

현행법 제78조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²⁾

현행법 제83조는 징계의결등의 요구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제3호),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제2호),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의 경우에는 10년의 연장된 징계시효를 정하고 있음(제1호).³⁾

-
-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③ 삭제
-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3)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성희롱, 성매매 관련 금지행위 등의 비위행위는 특성상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비위사실이 뒤늦게 적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법률 제18237호, 2021. 6. 8,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제83조의2제1항)》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해당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또는 스토킹 범죄 행위의 경우 현재 3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각성과 피해의 지속성 측면에서 다른 성관련 비위와 유사하므로,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와 같이 10년의 징계 시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중 음란 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⁴⁾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다른 스토킹범죄⁵⁾에 대해서도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와 동일한 10년의 징계시효를 적용하려는 것임.

징계시효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교육공무원법」
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에
대한 특례를 둔 사례도 있음.⁶⁾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 ⑤ (생략)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
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
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
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
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6) 「**교육공무원법**」 제52조(징계사유에 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 비위는 성관련 비위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려는 개정안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스토킹범죄나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 또는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며, 법률 시행에 일정한 유예기간(6개월)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였음.

행정안전부는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

1. - 4. 삭 제

5.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